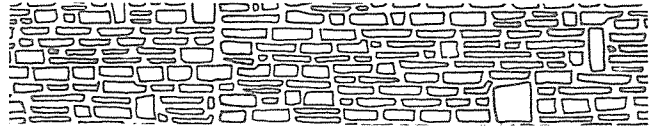


## 대전시 건축관계 조례

대전시 조례 제1023호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내의 건축제한 재해 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 벽면 및 담장의 구조, 대지내의 조경, 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조례는 대전시의 도시계획 구역 재해 위험 구역 및 취약지구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3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관장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지구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6. “최저고도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7. “최고고도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8. “제1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전폐율을  $\frac{2}{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9. “제2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전폐율  $\frac{3}{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10. “제3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전폐율  $\frac{4}{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11. “취락지구”라 함은 국토 이용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2. “재해위험구역”이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해일 고조 하천의 범람 또는 출수 기타 재해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3. “건축위원회”라 함은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거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2장 풍치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4조 (용도제한) : 풍치 지구내에서는 령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2.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3. 저탄장, 야적장
4. 작업소

제5조 (전폐율 등) : (1) 풍치 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frac{2}{10}$ 를 초과할 수 없다.

(2) 풍치지구 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풍치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

제7조 (대지안의 공지) :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미터
2.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제8조 (용적율) : 풍치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건축물의 높이) : 풍치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장 미관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0조 (건축심의) : (1)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의 절차 기준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도제한) : (1) 제1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3.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4. 창고, 저탄장, 야적장
5. 작업소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7. 정육점, 세탁소
8. 장의 관련 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2) 제2종미관지구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계기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제 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8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제 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6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5) 제 5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5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12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종 미관지구 : 600㎡
2. 제 2종 미관지구 : 400㎡
3. 제 3종 미관지구 : 400㎡
4. 제 4종 미관지구 : 300㎡
5. 제 5종 미관지구 : 400㎡

**제 13 조 (대지안의 공지)** :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전면 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1. 제 3종 미관지구	2미터
2. 제 4종 미관지구	2미터

**제 14 조 (건축물의 높이)** :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 (건축물의 규모)** : (1)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종 미관지구	14m	12m
제 2종 미관지구	12m	10m
제 3종 미관지구	12m	10m
제 4종 미관지구		
제 5종 미관지구	12m	10m

(2) 제 1종 내지 제 3종 및 제 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계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층 이하	100㎡
4 - 10층	200㎡
11 - 15층	400㎡
15층 이상	800㎡

**제 16 조 (건축물의 모양)** :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7 조 (건축물의 부수 시설 등)** : (1)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 4 장 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18 조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 최저 고도 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호에 계기하는 범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건폐율	용적율	대지 최소면적
높이의 최저한도를 10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frac{4}{10}$	100%	300㎡
최저높이 10-20m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frac{5}{10}$	200%	600㎡

**제 19 조 (최고 고도 지구내에 건축제한)** : 최고 고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지정된 최고 고도 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폐율 :  $\frac{5}{10}$
2. 용적율 : 800%

#### 제 5 장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0 조 (용도제한)** :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명 제 147조 제 1호 내지 제 7호에 계기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장의 관련시설
2. 전염,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3. 자동차 관련시설
4. 저탄장, 야적장
5. 정육점, 전당포
6. 교정시설

#### 제 6 장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1 조 (용도제한)** : 업무지구내에서는 명 제 148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전염,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2. 저탄장, 야적장
3. 전채, 공구상, 철물점
4. 작업소
5. 종교시설
6. 단독주택(공동제외), 공동주택
7. 운동시설
8. 교정시설

**제 22 조 (특정업무 지구내의 용도제한)** : 명 제 14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제 21조에 계기한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7 장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3 조 (건폐율) :**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종 공지지구 :  $\frac{2}{10}$
2. 제 2종 공지지구 :  $\frac{3}{10}$
3. 제 3종 공지지구 :  $\frac{4}{10}$

**제 24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공지 지구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종 공지지구 : 600m<sup>2</sup>
2. 제 2종 공지지구 : 400m<sup>2</sup>
3. 제 3종 공지지구 : 300m<sup>2</sup>

**제 25 조 (대지안의 공지) :** 제 1종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6m
2.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4m

**제 8 장 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6 조 (용도제한) :** 공항지구내에서는 령 제1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화학공장

**제 27 조 (건축물의 높이) :**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 장 아파트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8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아파트지구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공동주택 : 1,500m<sup>2</sup> 이상
2. 기타 건축물 : 300m<sup>2</sup> 이상

**제 29 조 (건폐율) :** 아파트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동주택 :  $\frac{4}{10}$
2. 기타 건축물 :  $\frac{5}{10}$

**제 30 조 (용적율) :** 아파트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3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1 조 (인동거리) :** (1) 아파트 지구내 동일 대지안에 건축하는 공동주택간의 인동거리는 각 건축물 높이의 1.5배 상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아파트 지구내의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frac{5}{10}$ 배에 상당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 32 조 (건축물의 모양) :** (1) 시장은 아파트 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모양, 색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장은 아파트 지구내의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대수선을 명할 수 있다.

**제 10 장 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33 조 (용도제한) :** 취락지구내에서는 령 제157조의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위락시설
2. 교정시설
3. 자동차 관련시설
4. 장의 관련시설
5. 도축장

**제 11 장 재해위험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34 조 (건축제한) :** 재해위험 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 관련시설
2. 동물 관련시설
3. 근린운동시설, 운동시설
4. 흥행, 전담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 기간 6개월 이내 가설 건물

**제 12 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 35 조 (벽면의 위치) :** 건축법 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 제 2항 또는 령 제168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6 조 (담장의 구조) :** (1)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철조망, 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시계획 구역내의 미관지구 내에서 담장의 높이 및 구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담장 및 벽면위 색채) :**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8 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장 대지안의 조경**

**제 39 조 (대지안의 조경) :** 령 제168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 등 조경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수하여야 한다.

구 분	식수밀도(제곱미터)	상록비율(%)
관 목	0.4본 이상	
교 목	0.3본 이상	상록수 : 40% 낙엽수 : 40%

**제 40 조 (조경사업비의 예치) :** 령 제168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 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 14 장 건축 위원회**

**제 41 조 (기능) :**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령

- 제171조 제 4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한다.
- 제 42 조 (조직) :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43 조 (위원장 등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4 조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45 조 (소위원회) :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6 조 (전문위원) : (1)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전문 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3) 전문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47 조 (간사 및 서기) :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둔다.  
 (2)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과 건축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 48 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9 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제 50 조 (수당)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과 제4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51 조 ((비밀준수) :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계한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 칙

- (1)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단서, 제15조 제 1항 단서, 제17조 제 3항 및 제32조 제 2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폐지조례) : 대전시 조례 제727호 미관지구 조례, 조례 제 703호 대전시 건축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제728호 교육 및 연구지구 조례 제360호 풍치지구 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4)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령 제180조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50세대 미만 아파트(연립주택) 건설지침

개정 1980. 5. 9.

### 1. 목 적 :

- 아파트(연립주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으로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 인근주거의 보호와 아파트(연립주택)의 질적향상등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있음.

### 2. 규제범위 :

- 대지의 규모
  - 150명(495평방미터)이상
  - 단 10세대 이상에 한하여 적용
- 대지의 인접도로 : 6미터 이상
- 건폐율 : 50% 이내 (단, 고도지구내에서는 60%이내)
- 층수제한 : 5층 이하
- 건축물의 구조
  - 세대간 간벽은 공간쌍기에 방음시설을 한다.
  - 벽체의 두께 : 19센티 이상
  - 외벽의 창문 : 2중창 (단 부속건물은 제외)
  - 최상층의 천정 : 방열시설
  - 지붕 : 2층 이하는 콘크리트 박공지붕위 후형스레트기와 지정색 페인트칠 (구배 1/10이상)
  - 단, 3층 이상은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배치
  - 2층 이하는 전면 건축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상 후퇴
  - 3층 이상은 전면 건축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
  - 단, 측면은 2미터 이상 후퇴 (4면이 폐쇄되어서는 안됨)
- 단지내의 도로
  - 출입도 6미터 이상
  - 단지내의 도로는 포장하여야 한다.
- 어린이 놀이터
  - 기준면적(10세대 기준) : 49.5평방미터(15평) 이상
  - 1세대 초과량 : 3.3평방미터(1평) 이상 비율로 가산
  - 필수시설 : 그네, 미끄럼틀, 철봉, 시소, 모래판등 1개 이상

9) 배수시설

- 1층 세대수에 해당하는 맨홀을 설치하고 토관으로 배수관 설치

10) 조 경

- 공지면적의 1/10이상 식수
- 장소선정 : 생육 가능지
- 담장 : 도로변은 투시형 담장

11) 오물 수거 시설

- 세대별 설치
- 맨홀 설치시 위치 : 다크슈트 하단  
깊이 : 1미터 이하  
수거구 : 수거에 편리 하게 설치 단, 1층 바닥이 지반보다 1미터 이상 높을시는 예외

12) 보안등 설치 : 대지사면에 1개소씩 설치 (200와트 이상 수은등)

13) 부실공사의 예방

- 공사감리자 공정보고 월 1회 제출(익월 5일까지)
- 시공기사 현장 대리 상주 배치
- 건축직 공무원 현장확인

3.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주택건설 촉진법, 기타 법률과 대전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하고 단, 대전시 관내 환경 기타 지형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본 지침은 1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에 적용한다.

4. 적용일시

- 본 지침 발표 후 1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 會員作品 原稿作成要領

※ 본지에 게재된 귀하의 設計作品은 본지와 더불어 永久保存되는 귀중한 資料가 되며, 또한 본지에 게재된 作品만이 자동적으로 本協會 建築賞의 候補作品이 됩니다.

(1) 구비도서 및 작성요령

① 圖面

- 配置圖 : 대지가 소규모인 때는 평면도에 겸한다. 대규모인 경우는 별도작성 (인쇄 크기의 2배정도 크기)
- 平面圖 : 1층평면 · 기준층평면.....일반적인 경우, 각종평면 (지하층포함) .....특수한 경우에 추가.
- 断面圖 : 주요 기준단면 ..... 단순한 경우는 생략

② 作成要領

1. 백지(트레이싱지 또는 쉐트지)에 검정색으로 잉킹한다.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모자이크 타일선 등과 같은 섬세한 부분은 생략 연필선은 지움.
2. 室名과 縮尺표시는 연필로 기입한다.
3. 방위표시는 잉킹한다.
4. 平面圖, 断面圖의 縮尺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소규모 (주택 등) )	.....	1/50 ~ 1/100
{ 중규모	.....	1/100 ~ 1/200
{ 대규모	.....	1/200 ~ 1/300

(2) 写真

- 作品写真 : 全景, 内部, 詳細 各 2~3 점씩.
- (흑백) : 全景写真은 촬영 불가능한 특수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透視圖로 대신 할 수 있다.
- 設計者写真 : 자연스러운 포-즈로 한다. 사진 뒷면에는 그 성명을 명기함.

(3) 建築物概要 및 設計說明

- 建築物 概要 : ① 建築物名 :  
② 所在地 :  
③ 設計者 : 担当 / 事務所名 별도 기입  
④ 施工者 :  
⑤ 規模 : 垜地面積 / 建築面積 / 基準層面積 / 延面積 / 地上層數 / 地下層數 / 層높이 / 建築物높이  
기타 施設規模(例 · 病床數, 客室數, 座席數 등)  
⑥ 構造 : 主体構造 / 柱스팬  
⑦ 設備 : 난방, 空調 / 衛生 / 電氣 기타

設計說明 : 계획과정과 계획방침 특기사항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200자 × 2 ~ 4 장

자세한 내용은 本協會 出版事業部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EL. 73-9491~2